

4 부채 / 채무 / 채권

4-1. 통합부채 현황

☐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.

▶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('23.12. 예정)

4-2.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

☐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(퇴직금, 미지급금, 보관금 등)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, '4-6. 지자체 채무 현황'의 지방채무와 '4-3. 지방공기업 부채' 중 직영기업(공기업 특별회계)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리 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21년	2022년	증 감	비고
자산(A)	1,047,275	1,128,928	81,653	
부채(B)	21,049	21,877	828	
자산대비부채비율 (B/A*100)	2.01	1.94	△0.07	

▶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

▶ 부 채 : 유동부채, 장기차입부채, 기타비유동부채

- 유동부채 : 단기차입금, 유동성장기차입부채, 기타유동부채 등

- 장기차입부채 : 장기차입금, 지방채증권

- 기타비유동부채 : 퇴직급여충당부채,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

▶ 자 산 : 유동자산, 투자자산, 일반유형자산, 주민편의시설, 사회기반시설, 기타비유동자산

※ 2021, 2022 회계연도 재무보고서(재무제표) 참조

4-3.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

☐ 우리 구의 지방공기업은 없습니다.

4-4. 출자·출연기관 부채 현황

☐ 우리 구의 출자·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	2021년				2022년			
		자산 (A)	부채 (B)	자본 (C)	부채비율 (B/C)×100	자산 (A)	부채 (B)	자본 (C)	부채비율 (B/C)×100
합 계		3,152	0	3,152	-	3,976	0	3,976	-
출연기 관	소 계	3,152	0	3,152	-	3,976	0	3,976	-
	(재)서구인재육성재단	3,152	0	3,152	-	3,976	0	3,976	-

4-5. 우발부채 현황

☐ 우발부채는 **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**를 의미하며,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▶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('23.12. 예정)

4-6. 지자체 채무 현황

☐ 지방(자치단체)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자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(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).

▶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.



4-7.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8	2019	2020	2021	2022
지방채발행한도액(A)	2,500	2,400	12,900	14,100	15,300
발행액(B)	-	-	-	-	-
발행비율(B/A*100)	-	-	-	-	-

- ▶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(7.1, 행안부장관→자치단체)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*한 기본한도액(7.15, 자치단체→행안부장관)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,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

* 지방재정법 개정('20.4.)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

- ▶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

* 별도한도액 = 의무매출채권(지역개발, 도시철도) + 차환채 +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

** 차환채 =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

※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(A)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'기본한도액'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'별도한도액'을 더한 금액을 기재

4-8. 일시차입금 현황

- ☐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.

▶ 우리 구의 2022년도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.

4-9.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

- ☐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(BTL, BTO 등)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.

▶ 우리 구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.

4-10. 재정건전성관리 계획·이행현황

☐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「지방재정법」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'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, '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, '22~'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▶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('23.12. 작성 후 공시예정)

4-11. 보증채무 현황

☐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, 우리 구가 2022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.



4-12. 채권 현황

-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(융자)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.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'21년도 현재액 (A)	증 감 액			'22년도 현재액 (A+B)	
		계 (B=C-D)	발생액(C)	소멸액(D)		
합 계	4,155	△154	65	219	4,001	
일 반 회 계	3,710	△114	0	114	3,596	
기 금 회 계	소 계	445	△40	65	105	405
	옥외광고발전기금	-	-	-	-	-
	통합재정안정화기금 (재정안정화계정)	-	-	-	-	-
	통합재정안정화기금 (통합계정)	-	-	-	-	-
	식품진흥기금	-	-	-	-	-
	재난관리기금	-	-	-	-	-
	자활기금	445	△40	65	105	405
	노인복지기금	-	-	-	-	-
	주차시설확충기금	-	-	-	-	-

- '22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

❖ 채권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8	2019	2020	2021	2022
채권현황	4,697	4,543	4,327	4,155	4,001

-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

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

